



# 충북혁신 4단지(진천군)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불가] 【 ☎1600-1004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12.] [임대종료일 2027.07.31.]**

## ■ 공급위치

· 충북혁신4 (10년공공임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87 천년나무4단지

■ 공급대상 : 충북혁신4 100세대 [전용면적 59A㎡ 45세대, 59X㎡ 25세대, 59B㎡ 12세대, 59C㎡ 18세대]

■ 이 주택의 만기분양전환 개시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공고              | 신청접수<br>(온라인)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자격검증<br>및 소명                             | 계약                                                 |
|-----------------|----------------------------------------------|-------------------------------------------------------------------|----------------------------------------------------------------------------------------------------------------------------------|------------------------------------------|----------------------------------------------------|
| 26.10.12<br>(월) | 26.10.26(월)<br>09:00 ~ 16:00<br>※ 현장접수<br>불가 | 26.10.30(금)<br>16:00 이후<br>LH 청약플러스<br>및 모바일앱<br>(apply.lh.or.kr) | 26.11.02(월) ~ 26.11.06(금)<br>※ 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소인분까지 인정)<br>(우)28328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br>73, 4층 LH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br>(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 자격검증 및<br>소명완료 후<br>대상자별<br>소명 안내문<br>발송 | 자격검증 및<br>소명완료 후<br>잔여세대 발생 시<br>예비순번에 따라<br>개별 통보 |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삭제)처리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12.(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51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 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중복혁신4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 블록(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자숙 가입 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호배정 및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주택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계약 시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 시 동호 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 검증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br>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 분양전환 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li> <li>-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li> </ul>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 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단지명(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원)       | 택지비(원)    | 건축비(원)      |
|------------------------|-----------|-------|-------------|-----------|-------------|
| 충북혁신<br>A-4<br>(천년나무4) | 059.9800A | 59A   | 115,251,000 | 9,470,000 | 105,781,000 |
|                        | 059.9800X | 59A-1 | 115,251,000 | 9,470,000 | 105,781,000 |
|                        | 059.9700B | 59B   | 116,118,000 | 9,468,000 | 106,650,000 |
|                        | 059.9800C | 59C   | 114,975,000 | 9,470,000 | 105,506,000 |

※ 항목별 세부 내역과 합계 금액 단수 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분양전환계약에 대한 안내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최초모집공고일    | 최초입주지정기간            | 임대차계약기간<br>종료월 | 만기분양전환 개시<br>예정월 |
|--------------|------------|---------------------|----------------|------------------|
| 충북혁신4(10년공임) | 2015.06.25 | '17.06.08~'17.07.07 | 2027.07        | 2027.08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br>※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br>※ 세대구성원 전원이란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br>(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 단지명<br>(블록)              | 유형        | 주택형                  | 발코니<br>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공급세대수    |           |                          | 최고<br>층수 | 해당 동                | 최초<br>입주<br>지정<br>기간 | 난방<br>방식<br>/구조<br>/지붕 |
|--------------------------|-----------|----------------------|-----------|-------------|----------|-----------|------------|-----------------|----------|-----------|--------------------------|----------|---------------------|----------------------|------------------------|
|                          |           |                      |           | 공급면적        |          | 그 밖의 공용면적 |            | 계약<br>면적<br>(계) | 건설<br>호수 | 기존<br>예비자 | 예비자<br>모집<br>호수<br>(100) |          |                     |                      |                        |
|                          |           |                      |           | 주거<br>전용    | 주거<br>공용 | 기타<br>공용  | 지 하<br>주차장 |                 |          |           |                          |          |                     |                      |                        |
| 충북혁신<br>A-4블록<br>(천년나무4) | 10년<br>임대 | 059.9800A<br>(59A)   | 확장        | 59.98       | 26.3803  | 4.3026    | 24.7377    | 115.4006        | 532      | 0         | 45                       | 22       | 401,402,<br>404~408 | '17.06<br>~'17.07    | 개별<br>난방               |
|                          |           | 059.9800X<br>(59A-1) | 확장        | 59.98       | 26.3803  | 4.3026    | 24.7377    | 115.4006        | 174      | 0         | 25                       | 22       | 401,402,<br>404~408 |                      |                        |
|                          |           | 059.9700B<br>(59B)   | 확장        | 59.97       | 26.3759  | 4.3019    | 24.7336    | 115.3814        | 174      | 0         | 12                       | 22       | 401,402<br>404~408  |                      |                        |
|                          |           | 059.9800C            | 확장        | 59.98       | 26.2380  | 4.3026    | 24.7377    | 115.4006        | 44       | 0         | 18                       | 22       | 403~404             |                      |                        |

- ※ 본 공고문은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 (2027.07월 임대기간 종료까지 미계약인 경우 예비자 자격은 자동 포기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 등 교체요구 불가)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7.08월,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분양전환 개시 전일까지이며, 만기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027.07월 임대기간 종료, 갱신 불가)

### ■ 임대주택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단위: 원]

| 단지명<br>(블록)      | 주택형<br>(타입)          | 임대조건       |               |              |          | 증액<br>(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            |         | 감액<br>(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           |         |
|------------------|----------------------|------------|---------------|--------------|----------|-------------------------|------------|---------|---------------------------|-----------|---------|
|                  |                      | 임대보증금      |               |              | 월<br>임대료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            |         |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           |         |
|                  |                      | 합계         | 계약금<br>(계약 시) | 잔금<br>(입주 시) |          |                         |            |         |                           |           |         |
| 충북혁신4<br>(천년나무4) | 059.9800A<br>(59A)   | 33,148,000 | 6,600,000     | 26,548,000   | 292,150  | 42,000,000              | 75,148,000 | 117,150 | -24,000,000               | 9,148,000 | 362,150 |
|                  | 059.9800X<br>(59A-1) | 33,148,000 | 6,600,000     | 26,548,000   | 292,150  | 42,000,000              | 75,148,000 | 117,150 | -24,000,000               | 9,148,000 | 362,150 |
|                  | 059.9700B<br>(59B)   | 33,148,000 | 6,600,000     | 26,548,000   | 292,150  | 42,000,000              | 75,148,000 | 117,150 | -24,000,000               | 9,148,000 | 362,150 |
|                  | 059.9800C            | 33,148,000 | 6,600,000     | 26,548,000   | 292,150  | 42,000,000              | 75,148,000 | 117,150 | -24,000,000               | 9,148,000 | 362,150 |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기 예시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증액 5%, 감액 3.5%)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하고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 지정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 입주하는 경우 입주(열쇠 내줌)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 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II

## 신청 자격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등

### 1. 신청 자격

-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충북혁신4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 블록(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자의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br>*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br>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br>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기준일**

• 주택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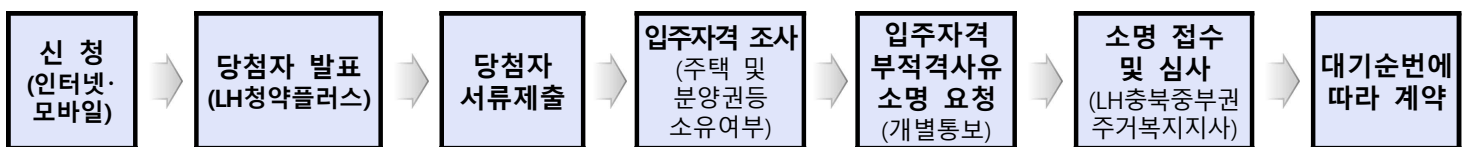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예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⑫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3.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 선정절차



####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2026.11.02.~11.06.)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삭제)됩니다.

#### ■ 당첨자 선정 후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인원을 제외한 후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 ■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당첨자 발표 당시의 예비입주자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중복청약 처리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2.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 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충북지역본부 중부권 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 공고              | 신청접수<br>(온라인)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자격검증<br>및 소명                             | 계약                                                 |
|-----------------|--------------------------------------------------|-------------------------------------------------------------------|----------------------------------------------------------------------------------------------------------------------------------|------------------------------------------|----------------------------------------------------|
| 26.10.12<br>(월) | 26.10.26(월)<br>09:00 ~ 16:00<br><br>※ 현장접수<br>불가 | 26.10.30(금)<br>16:00 이후<br>LH 청약플러스<br>및 모바일앱<br>(apply.lh.or.kr) | 26.11.02(월) ~ 26.11.06(금)<br>※ 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소인분까지 인정)<br>(우)28328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br>73, 4층 LH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br>(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 자격검증 및<br>소명완료 후<br>대상자별<br>소명 안내문<br>발송 | 자격검증 및<br>소명완료 후<br>잔여세대 발생 시<br>예비순번에 따라<br>개별 통보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참고용)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모든 유형(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 2.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 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단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지)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충북혁신4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 블록(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2. 신청 방법(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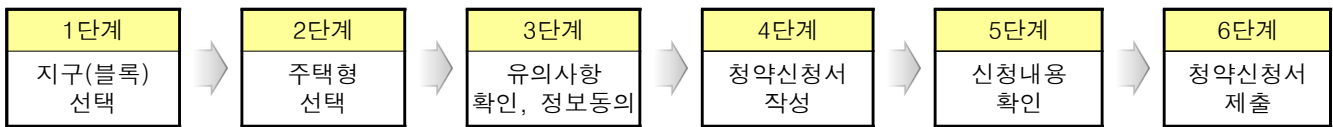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 ① 인증서 준비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③ 인터넷신청



#### ■ 유의 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9시부터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등 신청자의 해당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당첨자발표일 16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 당첨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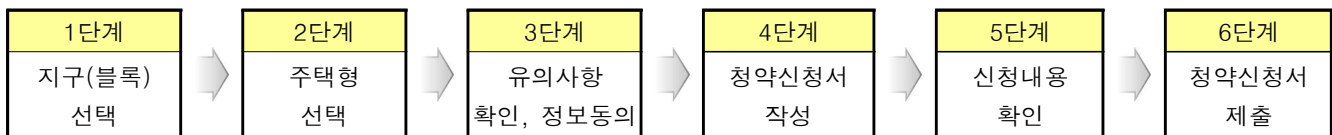
#### ①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http://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OS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계약 내역 조회, 잔금납부 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 사항은 인터넷(PC) 신청 방법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일정

### ■ 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
|---------------------------------------------------------------|--------------------------------------------------------------------------------------------------------------------------------|
| 2026.10.30(금) 16:00 이후<br>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br>(apply.lh.or.kr) | 2026.11.02(월) ~ 11.06(금) ※ <b>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소인분까지 인정)</b><br>우)28328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73 4층 LH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br>(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

### 당첨자 확인 방법

|     |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2026.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6.11.02.(월)~11.06(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관련 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 시 포함)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 당첨자가 청약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서류유형<br>필수 | 추가<br>(해당자) | 해당 서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br>[2026.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             |                            |                                                                                                                                                                                                                                                                                                    |
| ○          |             | 신청자 본인<br>주민등록표등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b>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1통 및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
|            | ○           | 신청자의 배우자<br>주민등록표등본        | <p>&lt;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b>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          |             | 신청자 본인<br>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상세용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개인정보<br>수집.이용 제3자<br>제공동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방법)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에 <b>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b></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 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 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 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 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충북혁신<br>천년나무4단지<br>(A-4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br>(301-82-17619) | 동문건설(주) (130-81-28180)<br>(주)파라다이스글로벌 (618-81-18649)<br>홍익산업개발(주) (123-81-31372) | (공사이행<br>보증서로 대체) | (공사이행보증서로<br>대체) |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 ~ 18:00]**

2026.10.12.



|         |          |           |
|---------|----------|-----------|
| 단 지 명 : | (신청형 : ) | 핸드폰 번호 :  |
| 신청자명 :  |          | 접 수 번 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기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li> <li>-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li> <li>-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입정횟수, 저축금액)</li> <li>-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li> </ul> | <p>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p> | <p><b>청약신청일로부터<br/>신청자는 6개월,<br/>당첨(예비)자는 5년</b></p> |
|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li> <li>- 공적연금 가입내역</li> <li>- 건강보험 가입내역</li> <li>-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li> <li>-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li> <li>- 사업자등록사항</li> </ul>                 |                                                                                                |                                                      |
| 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li> </ul>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a href="#">국토교통부장관</a>                              | <a href="#">주택소유여부 검색</a>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a href="#">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a>           | <a href="#">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a> |
| <a href="#">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a> | <a href="#">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a>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a href="#">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a>           |                                                |
| <a href="#">사회보장정보원</a>                              | <a href="#">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a>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a href="#">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a>           |                                                |
| <a href="#">한국부동산원</a>                               | <a href="#">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a> | 성명, <a href="#">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a>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                                                |
| <a href="#">전산관리지정기관</a>                             | <a href="#">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a>                      |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a href="#">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a>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